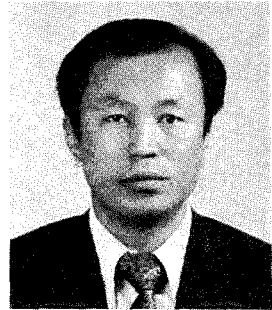


# 종계장 추백리 박멸을 위한 강화조치



남 궁 선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 1. 추백리란 어떤 병인가

추백리는 장내세균의 하나인 살모넬라 D<sub>1</sub> 군에 속하는 추백리균(salmonella pullorum)의 감염에 의해서 병을 일으키는 가금전염병이다.

이 병의 특징은 감염된 병아리에서는 급성 패혈증을 일으켜서 부화후 2주 이내에 90~100%의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며 간혹 이 병에 내과하여 살아남은 병아리는 위축제가 되어서 발육이 늦거나 추백리 보균체가 된다.

산란계에 있어서는 산란율과 부화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미닭에서 감염된 추백리균이 알을 통해서 다시 병아리에 전파시키는 소위 난계대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역상 중요시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법정전염병(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다.

## 2. 추백리 박멸을 위한 방역정책

추백리는 법정전염병이므로 국가에서도 추백리 퇴치를 위하여 국가방역사업으로 매년 많은 방역비를 들여서 추백리진단액을 가축위생연구소로 하여금 생산(표 1)하게 하고, 이 생산된 진단액을 각 시도에 배분하여 각 시도 가축위생

시험소로 하여금 해당 관할 종계장에 대하여 추백리 검색을 실시하게 하여 왔었다.

그러나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검색요원)은 한정되어 있고, 반면에 종계숫자는 매년 증가하여 왔으므로 추백리 검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욱이 닭 뿐만 아니고 소

표 1. 추백리진단액 생산실적

년 도	생 산 량(수분)	
	정 부 제 품	민 간 제 품
1970	1,327,000	-
1971	2,028,000	-
1972	2,028,000	-
1973	1,580,000	-
1974	1,600,000	-
1975	1,430,000	-
1976	810,000	-
1977	750,000	-
1978	1,013,000	809,000
1979	1,314,000	303,000
1980	1,701,000	640,000
1981	1,440,000	1,141,000
1082	1,410,000	28,000
1984	1,322,000	640,000

돼지 등 가축 두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가축방역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므로써 추백리검색은 해를 거듭할수록 소홀해져 왔다.

그래서 국가 가축방역당국에서는 추백리검색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8년 2월 14일 농수산부령 제 400호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 가.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내용 요약

① 추백리 검사기관으로서 국립동물검역소는 수출입 가금류를 검사하고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순종(P. L)을 검사하며 기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원종계(G. P. S) 및 종계(P. S)를 검사하게 하였다.

② 추백리 검사원의 자격으로서는 「첫째, 검사기관의 장은 가축방역관중 추백리 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검사업무를 명하여야 한다. 둘째,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공무원이 아닌 수의사중에서 추백리 검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검사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수의사로서 추백리 검사의 교육을 받은 자는 누구나 추백리 검색을 할 수 있게 문호를 넓혔다.

따라서 종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만 검색을 실시하던 것을 일반 수의사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켜서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를 덜어줌과 동시에 추백리 검색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들도 시행할 수 있게 시도하였었다.

③ 검사결과조치로서 첫째 추백리 양성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0조 및 동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조치하고, 둘째 추백리 검사결과 10% 이상 양성제를 나타내는 종계장에서 생산되는 알은 종란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축산법 제 14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강

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하고 추백리 검색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이 법이 고시된 초기에는 추백리 검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추백리검색이 법대로 시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이 났다.

이러한 이유는 종계업자나 추백리검색을 맡은 수의사들의 추백리 검색에 대한 인식부족과 감독기관의 감독소홀 등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 방역당국에서는 다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난 1984년 3월 26일 농수산부고시 제 84-12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 나.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개정고시 내용

① 추백리 검사 실시 : 첫째, 추백리 검사는 축주가 실시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추백리 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실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추백리 검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축주의 재량으로 추백리 검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추백리 검색을 완료한 축주는 추백리 검사 결과를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며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통지하여 추백리 확인을 받게 되었다.

② 확인검사 : 첫째,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연 1회이상 관할 종계장에 대하여 추백리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둘째, 확인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닭 마리수는 전 종계장의 사육규모 5%에 대해서 계군별로 고른 비율로 임의 추출하여 검사하게 되며, 다만 4,000마리 미만의 종계 규모의 경우에는 확인검사용 닭마리수를 200마리 이상으로 하였다.

③ 확인 검사결과조치 : 첫째, 확인검사결과 1%이상 발생된 계군은 종계로서 사용될 수 없게 함으로써 종전 10%에 비해서 대폭 추백리 양성제의 검출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둘째,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추백리 확인 검사결과 1%이상 양성제가 검출된 종계

장에 대해서는 종계업 등록기관과 종계심사 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하여 종계로서 사용할 수 없게끔 법을 강화조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 가축방역당국에서는 개정된 새로운 고시에 의거 추백리 검색이 철저히 시행되게끔 각 시도에 강력한 행정지시를 이미 시달하였으며,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관할 종계장에 대하여 추백리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축주들이 추백리 검색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시행할 수 있게 지도하는 등 앞으로 추백리 박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최근 국내의 추백리 검색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최근 추백리 검색현황을 보면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계장에서 추백리 검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하고 있어서 추백리 양성반응률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전국의 몇개 종계장을 대상으로 지난 1983년 7월부터 1984년 4월까지 5회에 걸쳐서 각 종계장의 계군별로 무작위로 10여수씩 채혈하여 얻은 혈청으로 추백리 검사를 한 성적을 보면(표 2) 추백리 양성 반응율이 평균 14.0%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크게 놀란 바 있다. 이 성적은 우리나라 종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만일 국

내 종계장이 모두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국가가 가축방역상 중대한 문제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양계선진국에서는 추백리가 종적을 감춘지 이미 오래다. 미국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추백리를 박멸시켰으며, 일본에서도 1970년 중반에 거의 박멸되어 가는 상태에 있다. 특히 종계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추백리가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의 추백리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볼 때 우리와는 너무도 거리감을 준다.

### 4. 추백리 박멸에 있어서 치료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다만 항체검사로 양성계를 철저히 적발, 도태하는 길 뿐이다.

추백리균도 세균인데 약제를 투여하여 치료할 수 없겠느냐는 이론도 있을 법하다. 더욱이 항간의 식자층에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거론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추백리는 절대로 치료될 수도 없을 뿐더러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추백리균이 닭체내에 감염되면 균자체는 닭체내의 난소, 고환, 담낭 등 실질장기에 깊숙히 들어가 서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특효약을 투여한다 해도 이곳에 혈관이 없어서 약효가 이곳까지 전달되지 못하므로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균을 잡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제에 대한 내성만을 조장시켜서 보균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아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 추백리 박멸을 위한 단 한가지 방법으로 추백리 항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양성계를 철저히 적발, 도태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왔었다.

표 2. 추백리 항체검사 가위 : 1984

검사회수	계 군 수	검사수수	양성반응율(%)
1	68	69/680*	10.1
2	68	129/680	18.9
3	56	112/560	20.0
4	77	88/805	10.9
5	18	21/195	10.7
계	287	419/2,920	14.0

\*양성반응수/검사수수

## 5. 이제 종계장 스스로 자성하여 자율적으로 추백리박멸에 앞장설 시점에 와 있다.

한 종계장에서 추백리 양성반응율이 14%의 수준에 이른다면 그 종계장은 종계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백리는 종계장에 있어서 질병오염의 척도로서 추백리 감염률이 높은 종계장 일수록 다른 질병의 감염률도 비례해서 높기 때문이다.

추백리 검색도 하지 않는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으로 부화된 병아리를 아무 꺼리낌 없이 양계농가에 분양시켜서 양계농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는 분명히 양식에 관계되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종계업자들은 우리나라 양계업계를 주도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해도 시행하는 국민이 그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법은 사장되고 마는 법이다.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양축가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추백리 검사제도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양계업계·양축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양계산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선진화를 위해서 달려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계장은 최소한도로 추백리만이라도 없는 종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6. 결 론

추백리는 폐사율이 높은 닭전염병으로서 난계대전염을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상 중요시하여 국가에서는 법정전염병으로 정하여 엄히 다스리고 있다. 따라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법제화 하는 등 국가에서 추백리 박멸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 종계장에서는 추백리 검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일부 종계장의 추백리 항체보유율이 14%의 높은 검출율을 나타내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방역당국에서는 양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여 과거의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시켜 종계장 스스로 자율적인 검색이 되게 조치하였다.

이제 우리나라 양계산업도 선진화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종계업 종사자들이 솔선하여 적어도 종계에서의 추백리 만이라도 박멸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 8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안내

- 채란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8월 16일(목) 오후 2시
- 육계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8월 27일(월) 오후 2시

분과위원은 물론 각 지역회원, 계우회회원 등 관심있는 양계인이면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